

1. 개정이유

신종 재난 등 재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상황 보고 대상을 추가 규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명 등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추가(안 제5조의2)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으로 재난상황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재난상황을 추가함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행화(안 별표 1)

타법 개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명칭 및 근거법을 현행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재난상황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8호 중 “「자연공원법」”을 “「국립공원공단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1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 황의 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 른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 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 한 재난상황</u>